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3.12.12.자)

1.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가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321호, 2023.3.28. 공포·시행)됨에 따라,
2.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3.12.12.자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약품유통협회, 한국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사)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대한한정품협회, 대한약사회,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 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주무관	조정은	사무관	김선영	의약품정책과	전결 2023. 12. 12.
				과장	안영진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12573 (2023. 12. 1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07 팩스번호 043-719-2606 / jungeun83@korea.kr / 대한민국 공개